



심사기준 및 비용

심사기준	구분	중분류	심사기준
기술경쟁능력	경연자	기술경쟁수준	기술경쟁수준
		경연관리	경연의지 및 사업추진능력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성	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독자성	기술의 독창성
		기술완성도	모범의 용이성
		기술확산성	핵심기술의 보유
		시장특성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시장성	제품 경쟁력	시장진입성	시장파급효과
		시장특성	시장진입성 안전성
		시장형성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사업성	수익창출	재무 경쟁력	시장 점유율
		생산기반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마케팅	생산설비의 적정성
		수익창출	제조 및 부품조달 용이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매출성장성

평가수료

-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신청인의 평가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평가 수수료(응답서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 * 기술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술평가기반에 평가의뢰사 추가로 발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농기평을 통해 지원

구분	평가수수료	평가수수료 지원(비율)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용 기술평가	70 만원	35만원(50%)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평가	20 만원	10만원(50%)

우수기술의 사업화, 농기평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진흥제 홈페이지 www.newat.or.kr
농기평 기술인중심센터 Tel. 031-420-6781-5

IPET 농림축산식품기평평가원

481-81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우양타운
<http://www.ipet.or.kr> | Tel. 031-420-6700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정부3.0과 함께합니다.

www.newat.or.kr

영국인
국민들을 위한
정부 3.0
[정당·공공·사회·협력]

우수기술의 사업화, 농기평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란? 농림부 및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실용·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IPET 농림축산식품기평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란?

농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고
실용-사업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지원혜택

- 지원내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 1억 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지 구입 및 부대 투융공사(절토, 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 지원형태**
 - 지원 : N농림은행 보증자금(1,000억 원, 이차보전사업(농업진흥자금)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연 고정금리 2.5% 또는 변동금리 1.37%, 2년 가차, 3년 균분상환
 - * 변동금리는 6개월마다 조정되며, 신청인이 사업투성 및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금리차용변시 선택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화소요자금을 규모에 중 점액당 10억 원 이내 매출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요건

종류	신청요건
우수기술 확인 평가	1.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인증에 해당 2. 신청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 3. 금융기관사정심사결과에서 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으로 확인 필요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	1.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인증에 해당 2. 이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보유 •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시행목적

농업·임업·축산·수산업에 우수기술의 사업화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 신청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 * 중소기업(법인/개인, 제조업)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조업의 농업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업종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대기업은 제외

■ 대상기술

- 농업·임업·축산·수산업분야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이 실용-사업화 하는 기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기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신기술
- 장부가 인정된 NEP*, NET* 및 이노비즈(INNOBIZ) 기술
- * NEP(New Excellent Product),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www.newet.or.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
 -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서신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번호	서류 목록	서류 준비
1	기술평가 신청서(자정양식)	• 온라인 신청
2	기술사업 계획서(자정양식)	• 온라인 신청
3	산업재산권 증명서류(해당 시 제출)	• 특허등록권부, 실용신안등록권부 등 기술의 권리문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비연동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5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분사·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에 대표자 및 법인의 소유인 경우 원형
6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최근 6개월 내(대표자표, 손익계산서, 이의인거름제본계산서 제외)인원명세서
7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6개월 미시점의 추계명부사본(법인) • 각종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NEP 등)
8	기타	



지원사업 추진 절차

